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1월 4일, 박홍배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2.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박홍배)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에 의해 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는 하수급인(중소 건설업체)과 소속 노동자,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사 품질 저하와 산업 전방의 불신을 야기함. 특히, 정부가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은 노무비 구분관리 등 일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전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일정비율 이상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개정안은 공사대금의 청구·수령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은 발주자가 ‘재량’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은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1항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함)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공사 예정가격 대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②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①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제2항제1호), ②하수급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제2항제2호), ③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제2항제3호), ④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 또는 건설업 등록 등 취소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제2항제4호), ⑤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하고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제2항제5호), ⑥공공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 대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달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제2항제6호)에 발주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수령 의무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할 대금의 사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4조제9항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개정안에서는 100분의 70) 이상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 심사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다수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들과의 병합 심사를 통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지급 원칙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및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경우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는 것으로 보임.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